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57,200,000	16,716,000
일반회계	470,100,000	14,103,000
특별회계	87,100,000	2,613,000
공기업특별회계	53,900,000	1,617,000
수도사업특별회계	17,600,000	528,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300,000	1,089,000
기타특별회계	33,200,000	996,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300,000	189,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47,000	76,41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932,000	27,9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45,000	64,3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83,000	2,49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584,000	77,520
치수사업특별회계	17,400,000	522,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5,000	45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194,000	35,8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887,24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